

서울회생법원 제2부

사건번호 2020회합100063회생

회생계획안

2021년 1월 28일

채무자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관리인 성낙민

목 차

제 1 장 회생계획안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현황	5
제 1 절 채무자의 현황	6
1. 채무자회사에 대한 일반사항	6
2.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원인	9
제 2 절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경과	10
1.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0
2.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경과	10
3. 회생절차 개시 후의 개선 노력	10
제 2 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11
제 1 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12
제 2 절 시인한 총 채권액 내역	13
1. 시인한 총 채권액	13
2. 주요 변동 내역	13
제 3 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15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5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6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7
4. 장래의 구상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7
5. 주주의 권리변경	17
제 4 절 결언	19
제 3 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0
제 1 절 총칙	21
1. 용어의 정의	21
2. 변제기일	22
3. 변제장소	22
4.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 시 채권자 확인방법	23
5. 변제총당순서	23
6. 권리변경 시 단수 처리방법	23
7. 변제금액의 확정	23
8. 외화표시채권의 원화환산 기준	23
9. 미회수 어음 및 수표 등의 처리	24
10. 채권양도의 특례	24
11. 변제 미이행 시의 처리	24
12. 회계연도	24
13. 기한의 이익 상실	24
14. 조기종결 후 강제집행	25
15. 기타	25

제 2 절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6
1.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26
2. 담보권의 존속 및 소멸과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27
3. 보험사고 발생 시 처리	28
4.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28
제 3 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9
1. 회생채권(대여금채권)	29
2. 회생채권(상거래채권)	30
3. 회생채권(손해배상채권)	33
4.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34
5.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35
제4절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36
제5절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 등의 처리	38
제6절 장래의 구상권의 처리	38
제7절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38
제8절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39
1. 미확정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내역	39
2.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40
제 4 장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41
제 5 장 변제자금의 조달 방법	43
제 1 절 투자자산 매각	44
제 2 절 보유 자산의 처분	44
제 3 절 차입금 등	44
제 4 절 기타수익금	44
제 6 장 자구노력의 추진	45
제1절 긴축경영을 통한 비용절감	46
제2절 미수채권등의 회수 주력	46
제 7 장 예상수익금의 과부족 시 처리방법	47
제 1 절 예상수익금의 초과 시 처리방법	48
제 2 절 예상수익금의 부족 시 처리방법	48
제 8 장 분쟁해결의 방법	49
제 9 장 주주권리의 변경과 신주의 발행	51
제 1 절 주주의 권리제한	52
제 2 절 신주의 발행	52
제 3 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	52
1. 회생채권(대여금채권)의 신주발행	52
2.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의 신주발행	53
3. 회생채권(손해배상채권)의 신주발행	53
4.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의 신주발행	53

5.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의 신주발행	53
6. 미확정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신주발행	54
7. 주식의 출자전환후 자본금 변동	54
제 4 절 기존 주식의 무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감소	55
제 5 절 출자전환 주식의 병합에 따른 자본의 감소	56
제 6 절 주식병합 후 납입자본금	56
제 10 장 사채의 발행	57
제 11 장 정관의 변경	59
제 12 장 임원의 선임 및 해임	61
제 13 장 관리인의 보수	63
제 14 장 운영자금의 조달방법	65
제 15 장 M&A의 추진	67
제 16 장 회생절차의 종결	69
제 17 장 회생절차의 폐지신청	71
제 18 장 기타사항	73

회생계획안 별표목록

별표 1	재무상태표	76
별표 2	조사기간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동사항.....	77
별표 3	추완신고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시·부인 총괄표.....	78
별표 4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동 및 권리변경 총괄표.....	107
별표 5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계획총괄표.....	116
별표 6	추정손익계산서	128
별표 7	자금수지계획표.....	129
별표 8	미확정채권 현실화 예상액.....	130
별표 9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후의 자본금의 변동.....	131
별표 9-1	주식지분 예상내역(신주·출자전환 및 병합).....	134
별표 10	담보물 배분표.....	137
별표 11	자산매각 계획서.....	138

제 1 장

회생계획안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현황

제 1 장 회생계획안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현황

제 1 절 채무자의 현황

1. 채무자회사에 대한 일반사항

가. 채무자회사의 개요

- (1) 상 호 :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 (2)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언주로 609 (논현동, 팍스타워)
- (3) 관 리 인 : 성낙민
- (4) 설 립 연 월 일 : 2007년 1월 12일
- (5) 업 종 :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 (6) 채무자 회사 정관상 주요 사업목적
 - 1. 종합채무설계 및 컨설팅 서비스
 - 2.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업
 - 3. 보험대리점
 - 4. 금융자문 컨설팅업
 - 5. 투자자문
 - 6. 금융, 재무관련 교육사업
 - 7.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 8. 출판사업
 - 9. 방문판매업
 - 10.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나. 채무자의 연혁

일자	내용
2007. 01	(주)골드앤리비츠 설립
2011. 08	(주)밸류인베스트코리아로 명칭변경
2012. 04	강남센터(서울) 설립
2012. 05	영남본부(부산) 설립
2012. 10	(주)밸류인라이프(자회사) 설립
2013. 01	강원지점(강릉) 설립
2013. 08	광주지점 설립
2013. 11	본사 이전(팍스타워)
2014. 02	빛고을지점(광주) 설립

회 생 계 획 안

일자	내용
2014. 03	전주지점 설립 / ㈜밸류컬처앤미디어(자회사) 설립
2014. 05	대구지점 설립
2014. 06	제주지점 설립
2015. 01	신세계지점(광주) 설립
2015. 07	울산지점 설립
2020. 04. 24	회생절차 개시신청
2020. 08. 04	회생절차 개시결정

다. 채무자회사의 주주현황

(단위: 주)

주주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이철	보통주	1,500,000	75.0%	대표이사
이재명	보통주	500,000	25.0%	
합계		2,000,000	100.0%	

라. 채무자회사의 조직과 인원현황

2021년 8월 4일 현재 채무자회사의 조직과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연번	구분	인원현황	비고
1	관리인	1	
2	대표이사	1	무급
3	투자관리부	6	
4	재무부	3	무급 휴직 1인
5	고객지원부	4	무급 휴직 1인
6	인사총무부	5	무급 휴직 1인
	계	20	

마. 채무자회사의 재무현황

채무자회사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채무자제시금액	재산상태 조정	재산상태조사액
유동자산	99,251	(96,672)	2,579
현금 및 현금성자산	123	(90)	33
단기금융상품	24	90	114
매출채권	23,178	(23,178)	-
단기대여금	57,685	(56,389)	1,295

회 생 계 획 안

(단위: 백만원)

구분	채무자제시금액	재산상태 조정	재산상태조사액
기타유동자산	18,241	(17,105)	1,136
비유동자산	432,702	(370,015)	62,687
투자자산	426,329	(370,942)	55,387
유무형자산	176	(73)	103
기타비유동자산	6,197	1,000	7,197
자산 총계	531,953	(466,687)	65,266
부채 총계	599,102	178,460	777,496
자본 총계	(67,149)	(645,147)	(712,231)
부채와 자본 총계	531,953	(466,687)	65,266

바. 채무자회사의 영업현황

채무자 회사는 종합 재무설계 컨설팅 서비스,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업, 보험대리점, 금융자문 컨설팅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중 20% 정도는 관리 수수료 형태로 취득하고 나머지 투자금 중 80%는 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회사 발행 주식을 투자 자산 형태로 취득하였으며, 위 피투자기업들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증대하면 이를 매각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과 함께 반환하는 것을 주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외부투자자금 유치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현재는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 기존 투자자산에 대한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 채무자회사의 관계회사현황

채무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주)밸류컬처앤미디어	(주)클라우드즌
업종	공연 기획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자산총계	5,785	2,412
부채총계	13,434	463
자본총계	(7,650)	1,949
매출	72	제시되지 않음
당기순이익	(4,674)	제시되지 않음
재무현황기준일	2019.12.31	2019.12.31
지분율	85.23%	100.0%
비고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음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음

2.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원인

채무자회사가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주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회사는 과거 약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의 공격적인 투자자 모집으로 인해 실제 일부 투자종목의 경우 투자성과 없이 이익금을 지급하여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이후 이러한 활동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어 투자자의 재산압류, 강제매각 등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2020년 4월 24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무자회사의 영업구조 상 지속경영의 어려움

채무자회사는 투자자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관리보수 등의 수수료 20%를 수취하여 이를 운영경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80%로 특정 투자자산을 취득하여 약정된 기간 내에 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여 투자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인데, 과거 채무자 회사의 투자자 모집방식 및 영업활동의 자본시장법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고, 해당 행위에 대한 검찰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에는 투자자 모집이 사실상 중단되어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업방식은 그 위법성을 차치하고서라도, 투자금의 80%를 가지고 원금의 20%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채무자 회사가 투자한 피투자기업들이 대부분 사업초기 단계의 소위 벤처기업으로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 달성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의 영업이 지속될수록 손실이 쌓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으며, 추가 투자자 모집을 통한 자금의 유입이 없이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나. 투자자들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유동성 악화

전항에 서술한 채무자회사의 영업방식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기소되고, 재판이 약 3년 이상 진행되면서 당초 투자금 회수 계획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채무자회사에 대한 신뢰는 물론 피투자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산 매각 등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익을 실현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과 법원의 판결 등을 기초로 투자자들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집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회사는 최소한의 운영자금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 2 절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경과

1.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채무자는 2020년 4월 2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0년 8월 4일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제3자관리인 선임결정을 받아 채무자회사의 재산관리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경과

채무자회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주요 경과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08.04. : 회생절차 개시결정

2020.08.04. ~ 2020.09.14.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제출

2020.09.15. ~ 2020.10.12.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신고

2020.10.13. ~ 2020.11.09.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

2020.11.30. :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2020.12.14. : 주요사항 요지통지

2021.01.28. : 회생계획안 제출

3. 회생절차 개시 후의 개선 노력

채무자회사는 2020년 8월 4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사는 핵심 필요인력 이외의 추가적인 인원 감축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사용을 억제하는 등 긴축 경영을 펼치는 한편, 피투자기업의 사업 추진, 증자 또는 자본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채무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2 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 2 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 1 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회사의 사업 계속을 통한 피투자기업의 보유지분가치 증대 및 적기매각에 따른 투자금회수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8월 4일 현재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자산 65,266백만원, 부채 777,496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712,231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사의 경제성에 대하여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는 59,149백만원으로 청산할 때의 가치인 48,087백만원 보다 11,062백만원 차이가 발생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무상황과 채무자회사의 영업활동을 고려할 때, 채무자회사가 안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부득이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각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권리변경하고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합니다.

회생 기간을 4년으로 하여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의 변제를 완료하며, 만일 예상수익금의 초과금이 변제할 회생채권을 조기에 전액 변제하고도 남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비율에 따라 추가 변제하거나 추가적으로 이익을 환원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관리인 이하 전임직원들은 본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경영 긴축 및 자산 매각이익의 극대화를 통하여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오니 따뜻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2 절 시인한 총 채권액 내역

1. 시인한 총 채권액

채권조사기간(2020.10.13 ~ 2020.11.9)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2020.09.15 ~ 2020.10.12) 이후 추후보완신고 등으로 관리인이 특별조사 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				변동액(+, -)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원금/본세	개시전이자/가산금	개시후이자/증가산금	합 계	원금/본세	개시전이자/가산금	개시후이자/증가산금	합 계	원금/본세	개시전이자/가산금	개시후이자/증가산금	합 계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1,330,721,239	-	-	1,330,721,239	-	95,926,409	-	95,926,409	1,330,721,239	95,926,409	-	1,426,647,648
	소 계	1,330,721,239	-	-	1,330,721,239	-	95,926,409	-	95,926,409	1,330,721,239	95,926,409	-	1,426,647,648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51,547,975,811	10,445,391,887	-	61,993,367,698	140,000,000	78,997,989	-	218,997,989	51,687,975,811	10,524,389,876	-	62,212,365,687
	상거래채권	3,931,472,988	796,600,709	-	4,728,073,697	(84,500)	-	-	-84,500	3,931,388,488	796,600,709	-	4,727,989,197
	손해배상채권	555,705,582,146	148,565,511,365	-	704,271,093,511	82,289,355	(135,944,898)	-	-53,655,543	555,787,871,501	148,429,566,467	-	704,217,437,968
	특수관계인채권	302,522,674	-	-	302,522,674	-	-	-	-	302,522,674	-	-	302,522,674
	미발생구상채권	2,704,800,000	-	-	2,704,800,000	-	-	-	-	2,704,800,000	-	-	2,704,800,000
	소 계	614,192,353,619	159,807,503,961	-	773,999,857,580	222,204,855	(56,946,909)	-	165,257,946	614,414,558,474	159,750,557,052	-	774,165,115,526
	조세등채권	1,223,553,700	2,443,440	46,425,150	1,272,422,290	23,531,230	70,917,780	-	94,449,010	1,247,084,930	73,361,220	46,425,150	1,366,871,300
	계	615,415,907,319	159,809,947,401	46,425,150	775,272,279,870	245,736,085	13,970,871	-	259,706,956	615,661,643,404	159,823,918,272	46,425,150	775,531,986,826
합 계	616,746,628,558	159,809,947,401	46,425,150	776,603,001,109	245,736,085	109,897,280	-	355,633,365	616,992,364,643	159,919,844,681	46,425,150	776,958,634,474	

2. 주요 변동 내역

가. 회생담보권의 변동

(1) 추완신고된 회생담보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총 1건이 추완신고 되어 관리인이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담보권은 총 1건에 금 95,926,409원으로 상세내역은 [별표3-2]과 같습니다.

(2) 이의철회된 회생담보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신고철회된 회생담보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소멸된 회생담보권

회생계획안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생채권의 변동

(1)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38건 금 3,657,710,329원이 신고 되었으며, 관리인이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채권은 그 중 금 648,004,766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별표3-3]과 같습니다.

(2) 이의철회된 회생채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17건에 금 153,527,271원으로 상세내역은 [별표3-4]과 같습니다.

(3) 신고철회된 회생채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신고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1건에 금 338,770,114원으로 상세내역은 [별표3-5]과 같습니다.

(4) 소멸된 회생채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25건에 금 297,503,977원으로 상세내역은 [별표3-6]과 같습니다.

(5) 명의변경된 회생채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67건에 금 1,636,628,097원으로 상세내역은 [별표3-7]과 같습니다.

(6) 정정된 회생채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조세등 채권의 변동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조세등 채권은 총 2건에 금 990,440,950원으로 상세내역은 [별표3-8]과 같습니다.

제 3 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회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변제할 채권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권리변경(출자전환)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원금/본세	개시전이자/가산금	개시후이자/증가산금	합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합계	원금/본세	개시전이자/가산금	개시후이자/증가산금	합계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1,330,721,239	95,926,409	-	1,426,647,648	-	-	-	-	1,330,721,239	95,926,409	58,979,177	1,485,626,825
	소계	1,330,721,239	95,926,409	-	1,426,647,648	-	-	-	-	1,330,721,239	95,926,409	58,979,177	1,485,626,825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51,687,975,811	10,524,389,876	-	62,212,365,687	47,397,873,819	9,650,865,516	-	57,048,739,335	4,290,101,992	873,524,360	-	5,163,626,352
	상거래채권	3,931,388,488	796,600,709	-	4,727,989,197	3,605,083,243	730,482,850	-	4,335,566,094	326,305,245	66,117,859	-	392,423,103
	손해배상채권	555,787,871,501	148,429,566,467	-	704,217,437,968	509,657,478,166	136,109,912,450	-	645,767,390,617	46,130,393,335	12,319,654,017	-	58,450,047,351
	특수관계인채권	302,522,674	-	-	302,522,674	302,522,674	-	-	302,522,674	-	-	-	-
	미발생구상채권	2,704,800,000	-	-	2,704,800,00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소계	614,414,558,474	159,750,557,052	-	774,165,115,526	560,962,957,903	146,491,260,817	-	707,454,218,719	50,746,800,571	13,259,296,235	-	64,006,096,807
	조세등채권	1,247,084,930	73,361,220	46,425,150	1,366,871,300	-	-	-	-	1,247,084,930	73,361,220	46,425,150	1,366,871,300
	계	615,661,643,404	159,823,918,272	46,425,150	775,531,986,826	560,962,957,903	146,491,260,817	-	707,454,218,719	51,993,885,501	13,332,657,455	46,425,150	65,372,968,107
합계	616,992,364,643	159,919,844,681	46,425,150	776,958,634,474	560,962,957,903	146,491,260,817	-	707,454,218,719	53,324,606,740	13,428,583,864	105,404,327	66,858,594,932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에 대하여 제1차년도(2021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2.9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일 전일까지 발생분에 대하여 발생연도에 변제하되, 준비연도(2020년)에 발생한 개시 후 이자는 제1차년도(2021년)에 합산하여 변제 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손해배상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1.7%는 출자전환하고, 8.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는 제1차연도(2021년), 27%는 제2차연도(2022년), 63%는 제3차연도(2023년), 2%는 제4차연도(2024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나.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출자전환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91.7%는 출자전환하고, 8.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는 제1차연도(2021년), 27%는 제2차연도(2022년), 63%는 제3차연도(2023년), 2%는 제4차연도(2024년)에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2차 연도(2022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회생계획안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 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2차 연도(2022년)부터 제3차 연도(2023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4. 장래의 구상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자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나.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5. 주주의 권리변경

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신주발행은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 100원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1주당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나.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기존 주식 2,000,000주(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 100원)에 대하여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액 무상소각합니다.

다. 출자전환 후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이 회생계획으로 인하여 병합된 기

회 생 계 획 안

존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등 잔여주식 전체를 대상(미발생구상채권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 되는 경우도 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3,000주를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제 4 절 결언

이 회생계획은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 보호라는 전제 하에 공정, 형평의 원칙과 이념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상당 부분을 출자전환하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해 적지 않은 거치기간으로 하는 권리변경과 변제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으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를 구하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큰 희생과 인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관리인 이하 전임직원은 뼈를 깎는 마음 가짐과 노력으로써 기필코 채무자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시켜 변제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추가적인 이익의 환원을 통해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회생계획은 채권자 여러분을 비롯한 이해관계인 및 사회 각 계층의 아낌없는 협력과 서울회생법원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관계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 3 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 3 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 1 절 총칙

1. 용어의 정의

이 회생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생계획기간”이란 준비연도(2020년)와 그 다음 연도인 2021년부터 4년간의 기간을 말하며,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준비연도”란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20년 8월 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 (3) “제1차연도”란 준비연도의 다음 연도인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며, 제2차연도 이후의 각 연도는 순차적으로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4) “개시 전 이자”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2020년 8월 3일)까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말합니다.
- (5) “개시 후 이자”란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20년 8월 4일)부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말합니다.
- (6) “연체이자”란 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말합니다.
- (7)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8) “보증기관”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채무의 보증을 업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한 기관을 말합니다.
- (9) “대여금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어음할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하여 교부한 금전을 포함합니다)에 따른 채권을 말하며, 금융기관이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채무자가 발행, 배서, 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취득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포함합니다.
- (10) “상거래채권”이란 채무자의 영업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대여금채권이 아닌 것을 말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가 채무자가 발행, 배서, 인수나 보증한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포함합니다.
- (11) “손해배상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에 투자한 금원과 관련한 민법상 손해배상채권을 의미하며,

회생계획안

다만 채권자가 위 채권을 원인으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에서 인정된 금액 상당의 채권을 의미합니다.

(12) “특수관계인”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법인, 그 밖의 단체, 개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

(13) “물상보증”이란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보증채권”이란 채무자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채권자가 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말합니다.

(15) “구상채권”이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소멸하게 한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말합니다.

(16) “미발생구상채권”이란 보증기관 등이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소멸하게 함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채권을 말합니다.

(17) “조세 등 채권”이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18) “인가일”이란 본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날을 말합니다.

2. 변제기일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매년 변제할 원금 및 이자는 해당 연도의 12월 30일(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 회생담보채권은 매월말)에 변제하며, 위 변제기일 전이라도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 이때 관리인은 이 회생계획 제7장 제1절(예상수익금의 초과 시 처리방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조기 변제기일에 있어서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관리인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날을 조기 변제일로 합니다.

3. 변제장소

이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변제는 채무자의 주소지나 채무자가 지정하여 통지하는 장소에서 행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과 지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변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입금증으로 상환영수증 또는 변제확인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4.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 시 채권자 확인방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개인은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채권자의 대리인은 채권자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가 제시한 서류로 채권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변제합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가 미리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수 있으며,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위와 같은 채권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상환확인서 또는 상환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변제충당순서

(1) 이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충당 순서는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합니다.

(2) 변제재원의 부족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변제할 채권액을 전액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원금, 회생채권의 원금의 순으로 당해 연도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며,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개시 전 이자, 회생채권의 개시 전 이자, 회생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 회생채권의 개시 후 이자, 회생담보권의 연체이자, 회생채권의 연체이자 순으로 당해 연도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되 당해 연도 변제예정금액 중 미변제분은 다음 연도 변제기일에 우선하여 변제합니다.

(3) 금융기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대출과목별 변제충당순서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별 변제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권리변경 시 단수 처리방법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권리변경 시 발생하는 “1”원 미만의 금액은 면제합니다.

7. 변제금액의 확정

이 회생계획상의 채권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 및 변제일이 별첨된 채권별 변제계획표의 금액 및 변제일과 상이한 경우에는 회생계획 본문에서 정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해 산정된 변제금액 및 변제일을 기준으로 변제합니다.

8. 외화표시채권의 원화환산 기준

외화표시채권은 외화로 변제하거나 변제 당일에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변제합니다. 다만, 외화표시채권을 원화로 대위변제한 구상금채권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한 시점의 중소기업은행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로 변제합니다.

9. 미회수 어음 및 수표 등의 처리

채무자가 발행하여 견질 및 용통 등으로 제공된 어음 및 수표는 채권회수 등 어떤 목적으로도 추심 또는 교환에 회부할 수 없으며, 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일에 어음, 수표 및 사채권증서의 원본을 채무자에 반환하고 위 어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채권자가 위 어음 등의 원본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제권판결 등 이를 무효화하는 법적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회생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비율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채권양도의 특례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 채권양도 등의 원인으로 채권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의 승계취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의 채권자 및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회생계획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11. 변제 미이행 시의 처리

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합니다. 다만, 개시 전 이자 및 개시 후 이자의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2. 회계연도

이 회생계획의 회계연도 표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13.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관하여 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일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2) 조기종결 후 회생계획기간 중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14. 조기종결 후 강제집행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후 이 회생계획이 정한 회생계획기간이 종료하기 전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변제대상 채권액 중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변제대상 채권액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제대상 채권액 뿐만 아니라 시인된 총 채권액 중 미변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이 회생계획의 용어 및 문헌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해석하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본 회생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해석에 따릅니다.

제 2 절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가. 시인한 총 채권액 내역

관리인이 조사기간에 시인한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과 그 이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신고 번호	목록 번호	채권자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				변동액(+, -)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합 계	원금	개시전이 자	개시후이 자	합 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합 계
주안 담보권 1	담보 권목록 1	(주)뉴라텍(대표이사 이석규)	1,303,120,000	-	-	1,303,120,000	-	95,926,409	-	95,926,409	1,303,120,000	95,926,409	-	1,399,046,409
-	담보 권목록 2	(주)밸류인베스트파트너(대 표이사 손선욱)	27,601,239	-	-	27,601,239	-	-	-	-	27,601,239	-	-	27,601,239
합 계			1,330,721,239	-	-	1,330,721,239	-	95,926,409	-	95,926,409	1,330,721,239	95,926,409	-	1,426,647,648

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에 대하여 제1차연도(2021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2.9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일 전일까지 발생분에 대하여 발생연도에 변제하되, 준비연도(2020년)에 발생한 개시 후 이자는 제1차연도(2021년)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다.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신고 번호	목록 번호	채권자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권리변경(출자전환)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합 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합 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합 계
주안 담보권 1	담보 권목록 1	(주)뉴라텍(대표이사 이석규)	1,303,120,000	95,926,409	-	1,399,046,409	-	-	-	-	1,303,120,000	95,926,409	57,838,112	1,456,884,521
-	담보 권목록 2	(주)밸류인베스트파트너(대 표이사 손선욱)	27,601,239	-	-	27,601,239	-	-	-	-	27,601,239	-	1,141,065	28,742,304
합 계			1,330,721,239	95,926,409	-	1,426,647,648	-	-	-	-	1,330,721,239	95,926,409	58,979,177	1,485,626,825

라. 세부적인 권리변경 내역은 [별표4-1]과 같고, 구체적인 연도별 변제계획은 [별표5-1]과 같습니다.

2. 담보권의 존속 및 소멸과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가. 채무 변제 시 담보권 소멸 및 존속

(1)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권, 질권 등 담보권은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합니다. 단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담보권과 담보 목적의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2) 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경우 그에 관한 담보권 일체가 소멸합니다. 이 때 회생담보권자는 점유하고 있는 담보목적물을 채무자에 인도하거나 담보권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채무자에 교부하는 등 담보권의 소멸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해당 담보목적물에 존재하는 담보권 말소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나. 담보목적물 처분 및 처분대금의 사용 방법

(1)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할 경우,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요한 경우 법원은 해당 담보목적물에 존재하는 담보권 말소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매각 관련 제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합니다. 다만 위 금액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의 것 중에서는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에 따르며, 남은 회생담보권액은 이 회생계획에 의한 회생담보권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여럿일 경우 그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 회생담보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생담보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비례하여 변제합니다.

(3) 담보목적물의 처분으로 인한 변제대금이 회생담보권 변제액에 미달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 기간 내에 담보목적물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미변제 회생담보권은 이 회생계획에 따른 본래의 변제계획에 따릅니다.

(4) 회생담보권을 변제한 후 남은 처분대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익채권의 변제 또는 채무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담보목적물 처분 위임

(1) 이 회생계획의 회생담보권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변제계획 불이행이 있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담보목적물 처분권한 위임을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우선순위 회생담보권자에게 당해 담보목적물의 처분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우선순위 회생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매각함에 있어 그 매각 조건에 관하여 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생 계획 안

(2) 다만 처분권한을 위임한 날의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는 그 담보목적물에 관한 회생담보권 전액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보험사고 발생 시 처리

가. 관리인은 보험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관리인이 위와 같이 담보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보험료로 지출된 금액은 채무자에 대한 공익채권으로 봅니다. 관리인은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되, 그 원금에 대하여 보험료 지급일부부터 변제일까지 이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율(연 2.93%)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보험금을 담보목적물의 복구에 사용하여야 하고, 복구한 물건에 대하여는 잔존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종전 순위에 따라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라. 관리인이 보험금으로 담보목적물을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담보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2.93%의 현가율을 적용하여) 조기 변제하되, 당해 담보목적물의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회생담보권의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변제합니다.

마. 관리인이 담보목적물의 복구나 채권 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보험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익채권을 변제하거나 채무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담보목적물의 보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갱신 시마다 기존 권리를 재설정하기로 합니다.

4.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가. 회생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당해 담보목적물의 복구가 가능하다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담보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수령하여 담보목적물의 복구에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된 물건에 대하여는 잔존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종전의 순위에 따라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나. 회생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 징수된 경우 관리인이 손해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수령하여 담보목적물을 복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담보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2.93%의 현가율을 적용하여) 조기 변제하되, 당해 담보목적물의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회생담보권의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변제합니다.

다. 관리인이 담보목적물의 복구나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익채권을 변제하거나 채무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가. 시인된 총 채권액의 내역

관리인이 조사기간에 시인한 회생채권(대여금채권)과 그 이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신고번호	목록번호	채권자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				변동액(+, -)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 이자	합 계	원금	개시전이 자	개시후 이자	합 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 이자	합 계
-	-	대여금채권(채권자 조경금의 1,479명)	51,547,975,811	10,445,391,887	-	61,993,367,698	140,000,000	78,997,989	-	218,997,989	51,687,975,811	10,524,389,876	-	62,212,365,687
합 계			51,547,975,811	10,445,391,887	-	61,993,367,698	140,000,000	78,997,989	-	218,997,989	51,687,975,811	10,524,389,876	-	62,212,365,687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1.7%는 출자전환하고, 8.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는 제1차연도(2021년), 27%는 제2차연도(2022년), 63%는 제3차연도(2023년), 2%는 제4차연도(2024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같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회생채권(대여금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신고번호	목록번호	채권자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권리변경(출자전환)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 이자	합 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 이자	합 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 이자	합 계
-	-	대여금채권(채권자 조경금의 1,479명)	51,687,975,811	10,524,389,876	-	62,212,365,687	47,397,873,819	9,650,865,516	-	57,048,739,335	4,290,101,992	873,524,360	-	5,163,626,352
합 계			51,687,975,811	10,524,389,876	-	62,212,365,687	47,397,873,819	9,650,865,516	-	57,048,739,335	4,290,101,992	873,524,360	-	5,163,626,352

라. 세부적인 권리변경 내역은 [별표4-2]과 같고, 구체적인 연도별 변제계획은 [별표5-2]과 같습니다.

회생계획안

2. 회생채권(상거래채권)

가. 시인된 총 채권액의 내역

관리인이 조사기간에 시인한 회생채권상거래채권과 그 이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신고번호	목록번호	채권자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				변동액(+, -)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합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합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합계
채권신고1115	-	(주)온에어미디어(대표이사 송승호)	103,000,000	-	-	103,000,000	-	-	-	-	103,000,000	-	-	103,000,000
채권신고63	채권목록 27242	대주회계법인(대표이사 권장식)	35,582,195	-	-	35,582,195	-	-	-	-	35,582,195	-	-	35,582,195
채권신고214	채권목록 27247	법무법인 광장(대표이사 안용석)	80,000,000	-	-	80,000,000	-	-	-	-	80,000,000	-	-	80,000,000
채권신고 1002	채권목록 27250	벤앤피주식회사	2,124,210,385	796,600,709	-	2,920,811,094	-	-	-	-	2,124,210,385	796,600,709	-	2,920,811,094
-	채권목록 27230	(주)가나통운공사(대표이사 노광삼)	12,717,450	-	-	12,717,450	-	-	-	-	12,717,450	-	-	12,717,450
-	채권목록 27231	(주)강남오에이센터(대표이사 신성인)	72,262,000	-	-	72,262,000	-	-	-	-	72,262,000	-	-	72,262,000
-	채권목록 27232	(주)슈빅(대표이사 김재명)	194,600	-	-	194,600	-	-	-	-	194,600	-	-	194,600
-	채권목록 27233	(주)에스원 (대표이사 윤진혁)	1,159,100	-	-	1,159,100	-	-	-	-	1,159,100	-	-	1,159,100
-	채권목록 27234	(주)오피스넥스(대표이사 조충관)	444,610	-	-	444,610	-	-	-	-	444,610	-	-	444,610
-	채권목록 27235	LG U+ (영지음플러스)(대표이사 하현희)	1,374,329	-	-	1,374,329	-	-	-	-	1,374,329	-	-	1,374,329
-	채권목록 27236	NICE평가정보(주)(대표이사 심희우)	1,100,000	-	-	1,100,000	-	-	-	-	1,100,000	-	-	1,100,000
-	채권목록 27237	SK텔레콤(주)(대표이사 박정호)	85,334	-	-	85,334	-	-	-	-	85,334	-	-	85,334
-	채권목록 27238	강대웅외(법률사무소 현울)	69,300,000	-	-	69,300,000	-	-	-	-	69,300,000	-	-	69,300,000
-	채권목록 27239	김승태(OA프라자)	231,000	-	-	231,000	-	-	-	-	231,000	-	-	231,000
-	채권목록 27240	김은혜(변호사 김은혜법률사무소)	108,900,000	-	-	108,900,000	-	-	-	-	108,900,000	-	-	108,900,000
-	채권목록 27241	노무법인원(대표이사 김우택)	550,000	-	-	550,000	-	-	-	-	550,000	-	-	550,000
-	채권목록 27243	류석우(신화OA)	1,430,000	-	-	1,430,000	-	-	-	-	1,430,000	-	-	1,430,000
-	채권목록 27244	박병철(법률사무소 다민)	161,008,016	-	-	161,008,016	-	-	-	-	161,008,016	-	-	161,008,016
-	채권목록 27245	박진홍	766,080,000	-	-	766,080,000	-	-	-	-	766,080,000	-	-	766,080,000
-	채권목록 27246	법무법인 함법(대표이사 심재환)	55,000,000	-	-	55,000,000	-	-	-	-	55,000,000	-	-	55,000,000
-	채권목록 27248	법무법인(유) 홍성(대표이사 김효준)	3,300,000	-	-	3,300,000	-	-	-	-	3,300,000	-	-	3,300,000
-	채권목록 27249	법무법인한중(대표이사 전병식)	17,420,000	-	-	17,420,000	-	-	-	-	17,420,000	-	-	17,420,000
-	채권목록 27251	상덕회계법인(대표이사 이응용)	6,600,000	-	-	6,600,000	-	-	-	-	6,600,000	-	-	6,600,000
-	채권목록 27252	삼척산업개발(대표이사 박정기)	80,855,315	-	-	80,855,315	-	-	-	-	80,855,315	-	-	80,855,315
-	채권목록 27253	안범수(링크문스터 부산지사)	132,000	-	-	132,000	-	-	-	-	132,000	-	-	132,000
-	채권목록 27255	영앤진회계법인(대표이사 장선택)	75,000,000	-	-	75,000,000	-	-	-	-	75,000,000	-	-	75,000,000
-	채권목록 27256	이기하(엘앤디디자인스튜디오)	40,000,000	-	-	40,000,000	-	-	-	-	40,000,000	-	-	40,000,000
-	채권목록 27257	이대중(DJ오피스파트너)	6,880,000	-	-	6,880,000	-	-	-	-	6,880,000	-	-	6,880,000
-	채권목록 27258	이일호(강남링크랜드)	7,305,600	-	-	7,305,600	-	-	-	-	7,305,600	-	-	7,305,600
-	채권목록 27260	임인영(성광기획인쇄)	594,880	-	-	594,880	-	-	-	-	594,880	-	-	594,880
-	채권목록 27262	정건(법률사무소 인우)	22,000,000	-	-	22,000,000	-	-	-	-	22,000,000	-	-	22,000,000
-	채권목록 27266	주식회사 지넥스(대표이사 신현식)	24,035,000	-	-	24,035,000	-	-	-	-	24,035,000	-	-	24,035,000
-	채권목록 27267	주식회사 포스북(대표이사 김대호)	70,000	-	-	70,000	-	-	-	-	70,000	-	-	70,000
-	채권목록 27268	주식회사 한국슈레더(대표이사 신윤영)	2,796,340	-	-	2,796,340	-	-	-	-	2,796,340	-	-	2,796,340
-	채권목록 27271	코웨이(주)(대표이사 이해선)	770,600	-	-	770,600	-	-	-	-	770,600	-	-	770,600
-	채권목록 27273	한국전력공사(이사장 김중갑)	4,634,234	-	-	4,634,234	(84,500)	-	-	(84,500)	4,549,734	-	-	4,549,734
-	채권목록 27274	한영회계법인(대표이사 박윤근)	38,500,000	-	-	38,500,000	-	-	-	-	38,500,000	-	-	38,500,000
-	채권목록 27275	한창섭(DMG컴퓨터)	550,000	-	-	550,000	-	-	-	-	550,000	-	-	550,000
-	채권목록 27276	홍인기	5,400,000	-	-	5,400,000	-	-	-	-	5,400,000	-	-	5,400,000
합계			3,931,472,988	796,600,709	-	4,728,073,697	(84,500)	-	-	(84,500)	3,931,388,488	796,600,709	-	4,727,989,197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1.7%는 출자전환하고, 8.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는 제1차연도(2021년), 27%는 제2차연도(2022년), 63%는 제3차연도(2023년), 2%는 제4차연도(2024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계획안

(단위: 원)

신고번호	목록번호	채권자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권리변경(출자전환)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합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합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합계
채권신고1115	-	(주)온에이미디어(대표이사 송승호)	103,000,000	-	-	103,000,000	94,451,000	-	-	94,451,000	8,549,000	-	-	8,549,000
채권신고63	채권목록 27242	대주회계법인(대표이사 권정사)	35,582,195	-	-	35,582,195	32,628,873	-	-	32,628,873	2,953,322	-	-	2,953,322
채권신고214	채권목록 27247	법무법인 광장(대표이사 안용석)	80,000,000	-	-	80,000,000	73,360,000	-	-	73,360,000	6,640,000	-	-	6,640,000
채권신고 1002	채권목록 27250	벤처피추식회사	2,124,210,385	796,600,709	-	2,920,811,094	1,947,900,923	730,482,850	-	2,678,383,773	176,309,462	66,117,859	-	242,427,321
-	채권목록 27230	(주)가나통운공사(대표이사 노광성)	12,717,450	-	-	12,717,450	11,661,902	-	-	11,661,902	1,055,548	-	-	1,055,548
-	채권목록 27231	(주)강남오에이센터(대표이사 신성인)	72,262,000	-	-	72,262,000	66,264,254	-	-	66,264,254	5,997,746	-	-	5,997,746
-	채권목록 27232	(주)슈빅(대표이사 김재명)	194,600	-	-	194,600	178,448	-	-	178,448	16,152	-	-	16,152
-	채권목록 27233	(주)에스원(대표이사 윤진혁)	1,159,100	-	-	1,159,100	1,062,895	-	-	1,062,895	96,205	-	-	96,205
-	채권목록 27234	(주)오피스넥스(대표이사 조종관)	444,610	-	-	444,610	407,707	-	-	407,707	36,903	-	-	36,903
-	채권목록 27235	LG U+ (엘지유플러스)(대표이사 허현회)	1,374,329	-	-	1,374,329	1,260,260	-	-	1,260,260	114,069	-	-	114,069
-	채권목록 27236	NICE평가정보(주)(대표이사 심희부)	1,100,000	-	-	1,100,000	1,008,700	-	-	1,008,700	91,300	-	-	91,300
-	채권목록 27237	SK텔레콤(주)(대표이사 박정호)	85,334	-	-	85,334	78,251	-	-	78,251	7,083	-	-	7,083
-	채권목록 27238	강대웅외2법률사무소 현울)	69,300,000	-	-	69,300,000	63,548,100	-	-	63,548,100	5,751,900	-	-	5,751,900
-	채권목록 27239	김승태(OA프라자)	231,000	-	-	231,000	211,827	-	-	211,827	19,173	-	-	19,173
-	채권목록 27240	김은혜(변호사 김은혜법률사무소)	108,900,000	-	-	108,900,000	99,861,300	-	-	99,861,300	9,038,700	-	-	9,038,700
-	채권목록 27241	노무법인원(대표이사 김우택)	550,000	-	-	550,000	504,350	-	-	504,350	45,650	-	-	45,650
-	채권목록 27243	류석우(신화OA)	1,430,000	-	-	1,430,000	1,311,310	-	-	1,311,310	118,690	-	-	118,690
-	채권목록 27244	박병철(법률사무소 다민)	161,008,016	-	-	161,008,016	147,644,351	-	-	147,644,351	13,363,665	-	-	13,363,665
-	채권목록 27245	박진홍	766,080,000	-	-	766,080,000	702,495,360	-	-	702,495,360	63,584,640	-	-	63,584,640
-	채권목록 27246	법무법인 함법(대표이사 심재환)	55,000,000	-	-	55,000,000	50,435,000	-	-	50,435,000	4,565,000	-	-	4,565,000
-	채권목록 27248	법무법인(유) 효성(대표이사 김효준)	3,300,000	-	-	3,300,000	3,026,100	-	-	3,026,100	273,900	-	-	273,900
-	채권목록 27249	법무법인한중(대표이사 전병식)	17,420,000	-	-	17,420,000	15,974,140	-	-	15,974,140	1,445,860	-	-	1,445,860
-	채권목록 27251	삼덕회계법인(대표이사 이용모)	6,600,000	-	-	6,600,000	6,052,200	-	-	6,052,200	547,800	-	-	547,800
-	채권목록 27252	삼희산업개발(대표이사 박정기)	80,855,315	-	-	80,855,315	74,144,324	-	-	74,144,324	6,710,991	-	-	6,710,991
-	채권목록 27253	안범수(인크몬스터 부산지사)	132,000	-	-	132,000	121,044	-	-	121,044	10,956	-	-	10,956
-	채권목록 27255	영명진회계법인(대표이사 장선택)	75,000,000	-	-	75,000,000	68,775,000	-	-	68,775,000	6,225,000	-	-	6,225,000
-	채권목록 27256	이기하(엠엠디자인스튜디오)	40,000,000	-	-	40,000,000	36,680,000	-	-	36,680,000	3,320,000	-	-	3,320,000
-	채권목록 27257	이대중(D)오피스파트너)	6,880,000	-	-	6,880,000	6,308,960	-	-	6,308,960	571,040	-	-	571,040
-	채권목록 27258	이일호(강남임크랜드)	7,305,600	-	-	7,305,600	6,699,235	-	-	6,699,235	606,365	-	-	606,365
-	채권목록 27260	임인영(성광기획인쇄)	594,880	-	-	594,880	545,505	-	-	545,505	49,375	-	-	49,375
-	채권목록 27262	정건(법률사무소 인우)	22,000,000	-	-	22,000,000	20,174,000	-	-	20,174,000	1,826,000	-	-	1,826,000
-	채권목록 27266	주식회사 지넥스(대표이사 신현식)	24,035,000	-	-	24,035,000	22,040,095	-	-	22,040,095	1,994,905	-	-	1,994,905
-	채권목록 27267	주식회사 포스텍(대표이사 김대호)	70,000	-	-	70,000	64,190	-	-	64,190	5,810	-	-	5,810
-	채권목록 27268	주식회사 한국슈레디(대표이사 신윤영)	2,796,340	-	-	2,796,340	2,564,244	-	-	2,564,244	232,096	-	-	232,096
-	채권목록 27271	코웨이(주)(대표이사 이해선)	770,600	-	-	770,600	706,640	-	-	706,640	63,960	-	-	63,960
-	채권목록 27273	한국전력공사(이사장 김중갑)	4,549,734	-	-	4,549,734	4,172,106	-	-	4,172,106	377,628	-	-	377,628
-	채권목록 27274	한영회계법인(대표이사 박용근)	38,500,000	-	-	38,500,000	35,304,500	-	-	35,304,500	3,195,500	-	-	3,195,500
-	채권목록 27275	한창섬(DMG컴퓨터)	550,000	-	-	550,000	504,350	-	-	504,350	45,650	-	-	45,650
-	채권목록 27276	홍인기	5,400,000	-	-	5,400,000	4,951,800	-	-	4,951,800	448,200	-	-	448,200
합계			3,931,388,488	796,600,709	-	4,727,989,197	3,605,083,243	730,482,850	-	4,335,566,094	326,305,245	66,117,859	-	392,423,103

라. 세부적인 권리변경 내역은 [별표4-3]과 같고, 구체적인 연도별 변제계획은 [별표5-3]과 같습니다.

회생계획안

3. 회생채권(손해배상채권)

가. 시인된 총 채권액 내역

관리인이 조사기간에 시인한 회생채권(손해배상채권)과 그 이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신고 번호	목록 번호	채권자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				변동액(+, -)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 이자	합 계	원금	개시전이 자	개시후 이자	합 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 이자	합 계
-	-	손해배상채권(채권자 조순남외 27,051명)	555,705,582,146	148,565,511,365	-	704,271,093,511	82,289,355	-135,944,898	-	(53,655,543)	555,787,871,501	148,429,566,467	-	704,217,437,968
합 계			555,705,582,146	148,565,511,365	-	704,271,093,511	82,289,355	-135,944,898	-	(53,655,543)	555,787,871,501	148,429,566,467	-	704,217,437,968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1.7%는 출자전환하고, 8.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는 제1차연도(2021년), 27%는 제2차연도(2022년), 63%는 제3차연도(2023년), 2%는 제4차연도(2024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회생채권(손해배상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신고 번호	목록 번호	채권자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권리변경(출자전환)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 이자	합 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 이자	합 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 이자	합 계
-	-	손해배상채권(채권자 조순남외 27,051명)	555,787,871,501	148,429,566,467	-	704,217,437,968	509,657,478,166	136,109,912,450	-	645,767,390,617	46,130,393,335	12,319,654,017	-	58,450,047,351
합 계			555,787,871,501	148,429,566,467	-	704,217,437,968	509,657,478,166	136,109,912,450	-	645,767,390,617	46,130,393,335	12,319,654,017	-	58,450,047,351

라. 세부적인 권리변경 내역은 [별표4-4]과 같고, 구체적인 연도별 변제계획은 [별표5-4]과 같습니다.

회생계획안

4.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가. 시인된 총 채권액 내역

관리인이 조사기간에 시인한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과 그 이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신고 번호	목록 번호	채권자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				변동액(+, -)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 이자	합 계	원금	개시전이 자	개시후 이자	합 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 이자	합 계	
-	채권목록 13368	신현중	143,033,959	-	-	143,033,959	-	-	-	-	143,033,959	-	-	-	143,033,959
-	채권목록 27161-4	황준성	24,559,125	-	-	24,559,125	-	-	-	-	24,559,125	-	-	-	24,559,125
-	채권목록 27259	이철	134,929,590	-	-	134,929,590	-	-	-	-	134,929,590	-	-	-	134,929,590
합 계			302,522,674	-	-	302,522,674	-	-	-	-	302,522,674	-	-	-	302,522,674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출자전환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같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신고 번호	목록 번호	채권자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권리변경(출자전환)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 이자	합 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 이자	합 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 이자	합 계
-	채권목록 13368	신현중	143,033,959	-	-	143,033,959	143,033,959	-	-	143,033,959	-	-	-	-
-	채권목록 27161-4	황준성	24,559,125	-	-	24,559,125	24,559,125	-	-	24,559,125	-	-	-	-
-	채권목록 27259	이철	134,929,590	-	-	134,929,590	134,929,590	-	-	134,929,590	-	-	-	-
합 계			302,522,674	-	-	302,522,674	302,522,674	-	-	302,522,674	-	-	-	-

라. 세부적인 권리변경 내역은 [별표4-5]와 같고, 구체적인 연도별 변제계획은 [별표5-5]와 같습니다.

회생계획안

5.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가. 시인된 총 채권액 내역

관리인이 조사기간에 시인한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과 그 이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신고 번호	목록 번호	채권자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				변동액(+, -)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합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합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 자	합계	
채권 신고 39	-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김상택)	2,704,800,000	-	-	2,704,800,000	-	-	-	-	2,704,800,000	-	-	-	2,704,800,000
합계			2,704,800,000	-	-	2,704,800,000	-	-	-	-	2,704,800,000	-	-	-	2,704,800,000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대위변제금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91.7%는 출자전환하고, 8.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는 제1차연도(2021년), 27%는 제2차연도(2022년), 63%는 제3차연도(2023년), 2%는 제4차연도(2024년)에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 2 차 연도(2022 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다.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신고 번호	목록 번호	채권자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권리변경(출자전환)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 자	합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합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 자	합계
채권 신고 39	-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김상택)	2,704,800,000	-	-	2,704,800,000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합계			2,704,800,000	-	-	2,704,800,000	-	-	-	-	-	-	-	-

라. 세부적인 권리변경 내역은 [별표4-6]과 같고, 구체적인 연도별 변제계획은 [별표5-6]과 같습니다.

제4절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신고된 총 채권액 내역

조사기간에 신고된 조세등 채권과 이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신고번호	목록번호	채권자	조사기간 내 신고된 채권액				변동액(+, -)				변동 후 신고된 총 채권액			
			본세	가산금	증가산금	합계	본세	가산금	증가산금	합계	본세	가산금	증가산금	합계
조세신고1	조세목록3	강남구청	1,141,720	55,000	-	1,196,720	-	-	-	-	1,141,720	55,000	-	1,196,720
조세신고2	조세목록2	강남세무서	234,273,970	2,388,440	46,425,150	283,087,560	-	-	-	-	234,273,970	2,388,440	46,425,150	283,087,560
추완조세신고1	조세목록1	국민건강보험공단	888,741,940	-	-	888,741,940	14,781,230	70,917,780	-	85,699,010	903,523,170	70,917,780	-	974,440,950
-	조세목록4	포항시 남구청	12,670	-	-	12,670	-	-	-	-	12,670	-	-	12,670
-	조세목록5	대구 중구청	28,460	-	-	28,460	-	-	-	-	28,460	-	-	28,460
-	조세목록6	부산 해운대구청	9,450	-	-	9,450	-	-	-	-	9,450	-	-	9,450
-	조세목록7	울산 남구청	33,940	-	-	33,940	-	-	-	-	33,940	-	-	33,940
-	조세목록8	전주시 완산구청	61,550	-	-	61,550	-	-	-	-	61,550	-	-	61,550
-	조세목록9	금융위원회	12,000,000	-	-	12,000,000	-	-	-	-	12,000,000	-	-	12,000,000
-	조세목록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80,000,000	-	-	80,000,000	-	-	-	-	80,000,000	-	-	80,000,000
추완조세신고2	조세목록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7,250,000	-	-	7,250,000	8,750,000	-	-	8,750,000	16,000,000	-	-	16,000,000
합계			1,223,553,700	2,443,440	46,425,150	1,272,422,290	23,531,230	70,917,780	-	94,449,010	1,247,084,930	73,361,220	46,425,150	1,366,871,300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2차 연도(2022년)부터 제3차 연도(2023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다.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조세등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계획안

(단위: 원)

신고번호	목록번호	채권자	변동 후 신고된 총 채권액				권리변경(출자전환)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본세	가산금	증가산금	합계	본세	가산금	증가산금	합계	본세	가산금	증가산금	합계
조세신고1	조세목록3	강남구청	1,141,720	55,000	-	1,196,720	-	-	-	-	1,141,720	55,000	-	1,196,720
조세신고2	조세목록2	강남세무서	234,273,970	2,388,440	46,425,150	283,087,560	-	-	-	-	234,273,970	2,388,440	46,425,150	283,087,560
주원조세신고1	조세목록1	국민건강보험공단	903,523,170	70,917,780	-	974,440,950	-	-	-	-	903,523,170	70,917,780	-	974,440,950
-	조세목록4	포항시 남구청	12,670	-	-	12,670	-	-	-	-	12,670	-	-	12,670
-	조세목록5	대구 중구청	28,460	-	-	28,460	-	-	-	-	28,460	-	-	28,460
-	조세목록6	부산 해운대구청	9,450	-	-	9,450	-	-	-	-	9,450	-	-	9,450
-	조세목록7	울산 남구청	33,940	-	-	33,940	-	-	-	-	33,940	-	-	33,940
-	조세목록8	전주시 완산구청	61,550	-	-	61,550	-	-	-	-	61,550	-	-	61,550
-	조세목록9	금융위원회	12,000,000	-	-	12,000,000	-	-	-	-	12,000,000	-	-	12,000,000
-	조세목록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80,000,000	-	-	80,000,000	-	-	-	-	80,000,000	-	-	80,000,000
주원조세신고2	조세목록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6,000,000	-	-	16,000,000	-	-	-	-	16,000,000	-	-	16,000,000
합계			1,247,084,930	73,361,220	46,425,150	1,366,871,300	-	-	-	-	1,247,084,930	73,361,220	46,425,150	1,366,871,300

라. 세부적인 권리변경 내역은 [별표4-7]과 같고, 구체적인 연도별 변제계획은 [별표5-7]과 같습니다.

제5절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 등의 처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내지 제156조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같은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6절 장래의 구상권의 처리

1.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2.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3.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제7절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1.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후 보완된 신고가 시인되거나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신고기간 만료 전에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관한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 등의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후 보완된 신고가 시인되거나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2. 위 1항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제8절 미확정 희생담보권 및 희생채권의 처리

1. 미확정 희생담보권, 희생채권의 내역

가. 희생담보권자, 희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희생담보권, 희생채권으로서 조사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된 채권 중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제기되어 희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있는 것은 희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채권자	조사확정재판 신청금액	사건번호	비고
손해배상채권	권정광	5,869,179	서울희생법원 2020 회확 909	
손해배상채권	범무법인 이래	2,633,623,014	서울희생법원 2020 회확 919	청구 이의의 소 제기
손해배상채권	정영기	86,058,836	서울희생법원 2020 회확 935	
손해배상채권	배은영	6,000,000	서울희생법원 2020 회확 974	
손해배상채권	홍성광	62,024,444	서울희생법원 2020 회확 976	
손해배상채권	김경대	37,476,083	서울희생법원 2020 회확 987	
손해배상채권	고미경 외 701 명	4,747,833,526	서울희생법원 2020 회확 988	조사확정재판 신청액은 고미경 외 701 명 합계액
손해배상채권	장용준	1,765,377,839	서울희생법원 2020 회확 989	

나. 제출일 현재 채무자회사가 피고로 계속 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상대방(원고)	청구금액(소가)	관할법원	사건번호	비고
손해배상	강명숙외 25	268,718,255	서울중앙지법	2019 가합 563068	기일 추정
성공보수등 청구의소	김다함외 6	320,212,156	서울고등법원	2020 나 2017700	2021.03.09. 10:50
손해배상	김민기외 28	1,349,773,620	서울고등법원	2019 나 2047262	기일 추정
손해배상	김순옥 외 3	89,364,429	서울중앙지법	2019 나 69768	기일 추정
성과분배금등 청구의소	문준재	1,290,870,682	서울고등법원	2020 나 2017694	기일 추정
손해배상	박승범외 1	97,000,000	서울중앙지법	2019 가단 5235828	기일 추정
손해배상	유성운외 2	105,000,000	서울중앙지법	2019 가단 5010661	기일 추정
손해배상	윤서현	22,872,494	서울중앙지법	2020 나 24013	2021.1.22.10:30 변론기일
손해배상	이덕선외 4	100,000,000	서울중앙지법	2019 가단 5088107	기일 추정
손해배상	이도영외 118	1,363,969,988	서울중앙지법	2019 가합 547479	기일 추정
손해배상	이상민	79,000,000	서울중앙지법	2019 가단 5256344	기일 추정

회생계획안

대여금	이일석 외 18	904,652,233	서울중앙지법	2020 가합 505839	기일 추정
손해배상	이재철외 30	485,428,359	서울고등지법	2019 나 2009055	기일 추정
손해배상	이진복외 58	1,205,300,000	서울중앙지법	2019 가합 546506	기일 추정
성과분배금등 청구의소	장용준	1,065,849,680	서울중앙지법	2019 가합 556374	기일 추정
손해배상	차혜란	60,000,000	서울중앙지법	2019 나 44479	기일 추정
손해배상	강태윤	29,500,000	서울중앙지법	2019 나 63609	기일 추정
투자금반환	양도연 외 2	73,920,000	서울중앙지법	2019 가단 5045629	2021.4.02.10:30 변론기일
투자금반환	양도연 외 4	459,000,000	서울중앙지법	2019 가합 510187	2021.1.28.15:10 변론기일
소가 합계		9,370,431,896			

2.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나. 위 가. 항에 따라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에 의하는 채권 이외에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 나항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합니다.

제 4 장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제 4 장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회생계획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종료 시까지 투자자산의 매각대금 및 공탁보증금 회수대금 등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계획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채권 내용	원금	개시전이자	합계	비고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채권	5,367	35	5,402	2021년 변제

제 5 장

변제자금의 조달 방법

제 5 장 변제자금의 조달 방법

제 1 절 투자자산 매각

변제자금은 기존 피투자기업 지분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2 절 보유 자산의 처분

투자자산 매각과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산을 회수할 경우에는 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합니다.

(단위:백만원)

자산명	평가액	처분비용	처분가액	매각연도	비고
현금성자산	33	-	33	2022년도 예상	
단기금융상품	114	-	114	2022년도 예상	
대여금	1,295	-	1,295	2022년도 예상	
미수수익	511	-	511	2022년도 예상	
미수금	625	-	625	2022년도 예상	
선납세금	1	-	1	2022년도 예상	
공탁 보증금	6,697	-	6,697	2020,2021년도 예상	
합계	9,276	-	9,276		

제 3 절 차입금 등

투자자산의 매각대금 등이 변제자금의 충당에 부족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이를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절 기타수익금

기타 수시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자구노력의 추진

제 6 장 자구노력의 추진

제1절 긴축경영을 통한 비용절감

채무자회사는 성공적인 회생계획안의 이행을 위하여 핵심 필요인력 이외의 추가적인 인원 감축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사용을 억제하는 등 긴축경영과 함께 이 회생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투자자산의 적시·고가 매각을 통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자금, 공익채권의 변제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회생계획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 최소한의 핵심 필요인력 중심 경영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방향에 최대한 부합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업무 재배치를 하고 인력활용도를 높여 잉여인력의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인건비(급여 및 4대보험료등)를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나. 비용구조의 개선을 통한 필요경비등 관련 지출 통제

기타 판매관리비등 관련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비용지출의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변제 자금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입니다.

다. 투명한 경영체제 확립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을 비롯한 전임직원은 투명한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여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제2절 미수채권등의 회수 주력

채무자회사가 미회수한 임직원 가지급금, 대여금 등의 철저한 회수와 피투자기업 및 관계회사의 미수채권 등의 회수를 통해 변제 자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 채무자회사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제 7 장

예상수익금의 과부족 시 처리방법

제 7 장 예상수익금의 과부족 시 처리방법

제 1 절 예상수익금의 초과 시 처리방법

1. 예상수익금을 초과하는 자산매각 대금 등이 발생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익채권의 변제, 운전자금의 사용,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등으로 사용합니다.
2. 조세채권을 제외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조기에 변제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채권에 대하여 연 2.67%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채권액을 변제합니다.
3. 예상수익금의 초과금이 변제할 회생채권을 조기에 전액 변제하고도 남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비율에 따라 추가 변제하거나 추가적으로 이익을 환원합니다.

제 2 절 예상수익금의 부족 시 처리방법

예상수익금의 부족으로 이 회생계획의 변제금액을 전액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변제합니다.

1. 우선 회생담보권의 원금, 회생채권의 원금 순으로 당해 연도의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합니다.
2.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개시 전 이자, 회생채권의 개시 전 이자, 회생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 회생채권의 개시 후 이자, 회생담보권의 연체이자, 회생채권의 연체이자 순으로 당해 연도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합니다.
3. 당해 연도의 변제예정금액 중 미변제분은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변제합니다.

제 8 장

분쟁해결의 방법

제 8 장 분쟁해결의 방법

관리인이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로서 분쟁이 발생하여 화해, 조정의 수락 또는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시행합니다.

제 9 장

주주권리의 변경과 신주의 발행

제 9 장 주주권리의 변경과 신주의 발행

제 1 절 주주의 권리제한

가.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나. 이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 2 절 신주의 발행

채무자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나. 1주의 액면가 : 100원

다. 채무자 회사는 수권 자본금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차례에 걸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라.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정관이 정한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주식 수, 신주를 인수할 자, 배정방법, 발행가액, 납입기일, 단주 및 실권주의 처리,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사무절차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합니다. 다만,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는 상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주발행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익영업일부터 발생합니다.

제 3 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

이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 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 합니다.

신주를 배정받을 채권자가 신주발행을 위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주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 회사 명의로 일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 회사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해당 채권자에게 신주를 양도합니다.

1. 회생채권(대여금채권)의 신주발행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나. 1주의 액면가 : 100원

다. 1주의 발행가 : 100원

라. 발행할 주식의 수 : 570,486,721주

마.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57,048,672,100원

회생계획안

바.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 57,048,739,335원

사.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익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의 신주발행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나. 1주의 액면가 : 100원

다. 1주의 발행가 : 100원

라. 발행할 주식의 수 : 43,355,649주

마.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4,335,564,900원

바.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 4,335,566,094원

사.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익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생채권(손해배상채권)의 신주발행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나. 1주의 액면가 : 100원

다. 1주의 발행가 : 100원

라. 발행할 주식의 수 : 6,457,660,419주

마.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645,766,041,900원

바.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 645,767,390,598원

사.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익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4.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의 신주발행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나. 1주의 액면가 : 100원

다. 1주의 발행가 : 100원

라. 발행할 주식의 수 : 3,025,224주

마.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302,522,400원

바.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 302,522,674원

사.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익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의 신주발행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나. 1주의 액면가 : 100원

다. 1주의 발행가 : 100원

라. 발행할 주식의 수 : 미정

마.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미정

바.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 미정

사.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익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6. 미확정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신주발행

미확정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서 확정되는 경우, 본 회생 계획 제3장 제8절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며, 신주발행의 효력은 해당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7. 주식의 출자전환후 자본금 변동

주식의 출자전환 후 자본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주)

주주명		출자전환 전			출자전환		출자전환 후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구주주	이철	1,500,000	150,000,000	75.00%	-	-	1,500,000	150,000,000	0.02%
	이재명	500,000	50,000,000	25.00%	-	-	500,000	50,000,000	0.01%
	소 계	2,000,000	200,000,000	100.00%	-	-	2,000,000	200,000,000	0.03%
회생채권 출자전환 신주발행	대여금채권			-	570,486,721	57,048,672,100	570,486,721	57,048,672,100	8.06%
	상거래채권			-	43,355,649	4,335,564,900	43,355,649	4,335,564,900	0.61%
	손해배상채권			-	6,457,660,419	645,766,041,900	6,457,660,419	645,766,041,900	91.25%
	특수관계인채권			-	3,025,225	302,522,500	3,025,225	302,522,500	0.04%
	미발생구상채권			-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소 계	-	-	-	7,074,528,014	707,452,801,400	7,074,528,014	707,452,801,400	99.97%
합 계	2,000,000	200,000,000	100.00%	7,074,528,014	707,452,801,400	7,076,528,014	707,652,801,400	100.00%	

(주1) 단주발생 등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릅니다.

(주2) 출자전환 후의 지분율 및 자본금은 [별표9]과 같습니다.

제 4 절 기존 주식의 무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감소

1. 주식소각의 방법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주식 2,000,000 주(기명식 보통주식 1 주당 액면가 100 원)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액 무상소각합니다. 주식소각 후 자본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주)

주주명	주식소각 전			주식소각에 따른 감소		주식소각 후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구주주	이철	1,500,000	150,000,000	0.02%	(1,500,000)	(150,000,000)	-	-	-
	이재명	500,000	50,000,000	0.01%	(500,000)	(50,000,000)	-	-	-
	소 계	2,000,000	200,000,000	0.03%	(2,000,000)	(200,000,000)	-	-	-
회생채권 출자 전환 신주발행	대여금채권	570,486,721	57,048,672,100	8.06%			570,486,721	57,048,672,100	8.06%
	상거래채권	43,355,649	4,335,564,900	0.61%			43,355,649	4,335,564,900	0.61%
	손해배상채권	6,457,660,419	645,766,041,900	91.25%			6,457,660,419	645,766,041,900	91.28%
	특수관계인채권	3,025,225	302,522,500	0.04%			3,025,225	302,522,500	0.04%
	미발생구상채권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소 계	7,074,528,014	707,452,801,400	99.97%			7,074,528,014	707,452,801,400	100.00%
합 계	7,076,528,014	707,652,801,400	100.03%	(2,000,000)	(200,000,000)	7,074,528,014	707,452,801,400	100.00%	

(주1) 주식소각후 지분율 및 자본금은 [별표9]과 같습니다.

2. 주권의 제출

소각되는 주권의 소지자는 이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권을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무상소각의 효력 발생일

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본장 제3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 효력 발생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제 5 절 출자전환 주식의 병합에 따른 자본의 감소

1. 주식 병합의 방법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전체를 대상(미발생구상채권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도 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3,000주를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2. 주식의 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주식의 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본장 제 4 절 기존 주식의 무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감소” 효력 발생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제 6 절 주식병합 후 납입자본금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및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주)

주주명	주식병합 전			주식병합에 따른 감소		주식병합 후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회생채권 출자전환 신주발행	대여금채권	570,486,721	57,048,672,100	8.06%	(570,297,437)	(57,029,743,700)	189,284	18,928,400	8.08%
	상거래채권	43,355,649	4,335,564,900	0.61%	(43,341,216)	(4,334,121,600)	14,433	1,443,300	0.62%
	손해배상채권	6,457,660,419	645,766,041,900	91.28%	(6,455,521,546)	(645,552,154,600)	2,138,873	213,887,300	91.26%
	특수관계인채권	3,025,225	302,522,500	0.04%	(3,024,219)	(302,421,900)	1,006	100,600	0.04%
	미발생구상채권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소 계	7,074,528,014	707,452,801,400	100.00%	(7,072,184,418)	(707,218,441,800)	2,343,596	234,359,600	100.00%
합 계	7,074,528,014	707,452,801,400	100.00%	(7,072,184,418)	(707,218,441,800)	2,343,596	234,359,600	100.00%	

(주1) 단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릅니다.

(주2) 주식병합 후의 지분율 및 자본금은 [별표9]과 같습니다.

주식의 출자전환, 기존주식 소각, 주식 병합 후의 주식의 수와 자본금의 액수는 본장 제3절 내지 제5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신주 발행결과에 따릅니다.

제 10 장

사채의 발행

제 10 장 사채의 발행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법규 및 채무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사채를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채의 발행규모와 발행시기 및 발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11 장

정관의 변경

제 11 장 정관의 변경

가. 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채무자 회사의 정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5조	당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당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0주로 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2.	<p>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 를 정할 수 있다.</p> <p>① 이사회 의 결의로 일반 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②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거나 우리 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④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⑤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 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p> <p>⑥ 상법 제 4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p> <p>① 이사회 의 결의로 일반 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②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거나 우리 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④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⑤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 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p> <p>⑥ 상법 제 4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⑦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p> <p>⑧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회생계획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2. 회생절차 진행중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2 장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 12 장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채무자회사의 현 대표이사, 이사는 회생계획의 인가와 동시에 전원 퇴임합니다.
2. 회생절차 중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각 1년 이내로 합니다.
4. 관리인은 임기 중 대표이사, 이사를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5.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 중 대표이사, 이사를 변경,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하되 이때 변경 또는 보충된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는 종전 대표이사, 이사의 잔여 임기까지로 합니다.
6. 대표이사, 이사의 보수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정합니다.

제 13 장

관리인의 보수

제 13 장 관리인의 보수

회생절차 진행 중에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이사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의 보수 결정의 효력은 법원이 그에 관한 허가 또는 결정을 하는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제 14 장

운영자금의 조달방법

제 14 장 운영자금의 조달방법

채무자 회사의 운영자금의 조달 방법은 투자자산 매각대금과 미수채권 회수 등으로 충당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조달합니다.

제 15 장

M&A의 추진

제 15 장 M&A의 추진

1. 관리인은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이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채무변제의 극대화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 회사의 제3자 매각, 영업양도 등 적절한 방식의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2. 관리인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에 따라 회생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6 장

회생절차의 종결

제 16 장 회생절차의 종결

1.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회생절차의 종결)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정한 바에 따라 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한 결과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기에 회생절차의 종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나. 채무자 회사의 총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는지 여부

다.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상 예정된 영업이익 수준을 대폭 초과 달성하거나 수년간 계속하여 상당한 정도로 초과 달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라. 제3자가 채무자 회사를 인수하여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경상이익의 실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2.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경우 채권자협의회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 수행을 감독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이 구성되는 채권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는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인이 회생절차 종결 이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협약을 체결하여 정하기로 합니다.

제 17 장

회생절차의 폐지신청

제 17 장 회생절차의 폐지신청

다음의 경우 관리인은 회생절차의 폐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업실적이 회생계획상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3.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여 향후 자금 수급계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노사쟁의 기타 회사내부의 분규나 이해관계인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간섭 등이 계속되어 회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제 18 장

기타사항

제 18 장 기타사항

1. 채무자 회사는 “서울회생법원실무준칙 제253호(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2. 이 회생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서울회생법원실무준칙”에 근거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합니다.
3. 이 회생계획의 용어나 자구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의 해석에 따릅니다.